대전광역시 중구

구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jjunggu.go.kr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1,481호

2023. 9. 25.(월)

차 례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2

안 내 문

▣ 공보의 게재방법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중구공보 발행일 : 매주 금요일(전자공보) ◎ 공보문건 접수마감 : 매주 목요일

※ **금요일이 휴일일 경우는 목요일에 발행**되며 **접수 마감일 이후는 다음호에 게재**됨을 양해하여 주시고 특별한 문건은 사전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번호 없이 접수되는 문건은 게재할 수 없으니 각 실·과·소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 고시공고에 등재 후 시행문은 전자결재로 기획홍보실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는 전자공보로 구 홈페이지(민원·행정-행정자료실)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발행: 대전광역시 중구 / 편집: 기획홍보실 언론홍보팀(우34939) 대전 중구 중앙로 100 ☎ 606-6163, Fax 606-7910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3-1209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중구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공용차량 관리 규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규칙을 현행에 맞도록 정비하여 공용차량 관리·운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임차차량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12호)

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및 임차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다. 과실에 대한 책임 규정 신설(안 제29조의2)

라. 승용 차량 기준정수 정비 및 부가적인 내용 삭제(안 별표2)

4.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939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0(대흥동) 중구청 회계과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042-606-6057), FAX(042-606-7914),
이메일(ghy9870@korea.kr),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회계과 담당자 송윤지(전화: 042-606-6057)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대전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 중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를 “차량 및 임차차량에”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총괄관리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차형변경은”를 “차종변경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집중관리부서”를 “총괄관리부서”로, “집행하여야 한다”를 “집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집중관리부서는 해당”를 “제2차 관리부서는 지정받은”으로 하며, 같은 조 3항을 삭제한다.

제21조 중 “단위부서의 장은”을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29조 중 “차량관리 부서에”를 “차량 총괄부서에”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 ① 단위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제32조 중 “제30조까지의”를 “제29조까지의”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 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경형·지프형·다목적형 등 그 밖에 승용차
구본청		21대	1대 (구청장전용)	4대 (부구청장전용1대, 업무용3대)	16대
보건소		3대			3대
4급기관장 사 업 소	정원 100명미만	1대			1대
동		18대			18대
구 의회		2대	1대 (의전용)	1대	

<삭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신 설〉	1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하되,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3조(적용범위) ----------차량 및 임차차량에----------, ----------.
〈신 설〉	제6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총괄관리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 ----------차종변경은----------.

제19조(차량 관리방법) ① 단위부서가 보유하는 차량 및 운전원 등에 관한 예산등은 집중관리부서에서 일괄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 관리방법) ① ----------총괄관리부서에서----------집행할 수 있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② 제2차 관리부서는 지정받은 ----------.
③ 제18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제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 관리만 담당한다	〈삭 제〉
제21조(유류구입 등) 단위부서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1조(유류구입 등) 차량 총괄부서 및 단위부서의 장은 ----------.
제29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사고보고) ---------- 차량총괄 부서에----------.

〈신 설〉	제29조의2(과실에 대한 책임) ① 단위부서의 장은 운전원이 차량운행 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사고에 고의가 없을 것 ②「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서를 단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정차,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32조(차량직접운전) 구 소속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은 업무능률의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 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제32조(차량직접운전) ---------- ---------- ---------- ---------- ---. ---------- ---------- ----------

등에 관하여는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9조까지의 ----------.

[별표 2] <개정 2017.6.1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 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경형·지프형·다목적형 등 그 밖에 승용차
구본청		14대	1대 (구청장전용)	3대 (부구청장전용1대, 업무용2대)	10대
보건소		3대			3대
4급기관장 사 업 소	정원 100명미만	1대			1대
동		18대			18대
구 의회		2대	1대 (의전용)	1대	

※ 그 밖에 승용차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포함한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 (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 차량 기준정수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		기준 정수	차 형 별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소형·경형·지프형·다목적형 등 그 밖에 승용차
구본청		21대	1대 (구청장전용)	4대 (부구청장전용1대, 업무용3대)	16대
보건소		3대			3대
4급기관장 사 업 소	정원 100명미만	1대			1대
동		18대			18대
구 의회		2대	1대 (의전용)	1대	

<삭제>

【관 계 법 령】

□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이하 “각급 행정기관”이라 한다)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의 정수 이체”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은 행정기관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차량 정수를 이체하는 것을 말한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회계과 지방행정서기 송윤지(042-606-6057)